

# 조달청, KS·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납품검사 면제

'15년부터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심사 거쳐 2년간 면제



'15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되어 조달업체 부담이 경감된다.

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5년 1월 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가계약 :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체결한 계약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써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동안은 납품검사 면제 재신청을 제한하여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KS인증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납품검사 면제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면제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쇼핑물에 등재된 물품으로 KS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li> <li>※ 단, KS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관련된 297개 품명에 속하는 경우 면제 신청 제외</li> </ul>
신청자의 결격 사유 (신청·선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li> <li>※ 당해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해당</li> <li>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경우</li> <li>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li> <li>최근 3년 이내에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경우</li> </ul>

※ KS인증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4-4호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참고

문의 ▶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070-4056-8122)